

『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5월 19일

나. 발 의 자 : 장세구, 김재우, 송용자, 양진오, 최경동 의원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6월 12일

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세 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, 태양광발전시설 난립 방지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허가기준 개정[별표27]

1)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상향

가. 주요도로 : 200미터 이내 → 500미터 이내

나.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: 200미터 → 500미터

※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: 50미터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
15미터를 곱한 거리 추가 이격 → 300미터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
20미터를 곱한 거리 추가 이격

2) 특정 건축물(축사, 작물재배사 등)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같은 법
시행령 제5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○ 본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
- 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을 보호하고,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방지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가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500M로 조정되었고, 축사·작물재배사·곤충사육사 등 농업시설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임.
-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됨에 따라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태양광발전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